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81호 2024. 3. 28.(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4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4-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3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467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사천시 공고 제2024-477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 13
- 사천시 공고 제2024-482호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 15
- 사천시 공고 제2024-505호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22
- 사천시 공고 제2024-508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9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고시 제2024-45호

## 사천시 상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기본계획 고시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상촌항 일원에 추진 중인 “상촌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사업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상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2.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상촌항 일원
3. 사업의 목적
  - 소규모 어항의 취약한 어업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어항 공간 창출
  - 어민·어선의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시설 확충
  - 상촌항 배후마을 입지여건을 반영한 편리한 어촌기반 마련
4.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3년간)
5.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1,500)
6. 사업내용
  - 상촌항 어항공간 확충 및 안전시설 정비, 주민역량강화
7.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8. 부문별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정비)계획

구분	시설	단위사업	주요내용	사업비(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1+2+3)				5,000.0	3,500.0	1,500.0	-
핵심 시설	소계 (1)			3,438.0	2,406.6	1,031.4	-
	어항 외곽시설	기존 파제제 정비 및 연장	파제제 연장 설치 (L=70m)	712.0	498.4	213.6	-
	어항 계류시설	경사식 선착장 정비	선착장 연장 및 보강 (L=47m)	300.0	210.0	90.0	-
	어항 기능 편익시설	어구보관창고 조성	어구·어망보관시설 조성 (A=150㎡)	330.0	231.0	99.0	-
		굴폐각처리장 조성	공동 굴폐각처리장 조성 (A=25㎡)	55.0	38.5	16.5	-
	기타 어항시설	어항기능 및 편익기반 조성	어업지원시설 부지 조성 (A=950㎡)	1,546.0	1,082.2	463.8	-
		물양장 안전난간 설치	안전난간 설치 (L=73m)	19.0	13.3	5.7	-
		선착장 파제벽 설치	파제벽(파도방지) 설치 (L=60m, H=0.5~0.7m)	36.0	25.2	10.8	-
		어항시설관리 CCTV 확충	CCTV 설치 (2개소)	40.0	28.0	12.0	-
		공용화장실 설치	노후화장실 교체 (1개소)	100.0	70.0	30.0	-
		상촌항 진입로 개선	어항 진입부 개선 (A=2,000㎡)	300.0	210.0	90.0	-
주요 시설	소계 (2)			891.0	623.7	267.3	-
	마을환경 개선지원	어민쉼터 설치	상촌항 어민쉼터 조성 (A=100㎡)	440.0	308.0	132.0	-
		배후마을 안길 정비	마을안길 보행로 설치 (L=805m, B=2.0m)	451.0	315.7	135.3	-
사업 지원	소계 (3)			671.0	469.7	201.3	-
	설계비	기본계획	상촌항 기본계획 수립 1식	122.0	85.4	36.6	-
		시행계획	상촌항 시행계획 수립 1식	538.0	376.6	161.4	-
	감리비	공사감리비	건축공사 감리비	11.0	7.7	3.3	-

## 9. 기타사항

- 기본계획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상시 열람 가능
- 문의처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TF팀 (☎055-831-3106)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고시 제 2024-4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3. 28.

사 천 시 장

###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4-1 (2024.3.18.)	공도방지를 위한 데크설치	서포면 비토리 산 47-5번지선	385 (직접)	2024. 3. 18. ~ 2039. 3. 17.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2024-2 (2024.3.20.)	금문항 선착장 확장 및 부잔교 설치	용현면 금문리 379-11번지선	계: 1,530 - 직접: 973 - 간접: 557	2024. 3. 20.~ 2039. 3. 1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공고 제2024-467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03년 책정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수수료 금액으로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조정 (안 별표4)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3)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별표 4]</b>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b>[별표 4]</b>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광고물등</th> <th style="width: 33%;">적용기준</th> <th style="width: 34%;">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td> <td>-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4,000원 20,000원 800원</td> </tr> <tr> <td>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td> <td>-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4,000원 20,000원 1,600원</td> </tr> <tr> <td>다. 옥상간판</td> <td>-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21,000원 38,000원 1,300원</td> </tr> <tr> <td>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td> <td>-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4,000원 20,000원 800원</td> </tr> <tr> <td>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td> <td>-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td> <td></td> </tr> <tr> <td>사. 현수막 게시시설</td> <td>-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1,000원 600원</td> </tr> <tr> <td>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td> <td>-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 <td></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광고물등</th> <th style="width: 33%;">적용기준</th> <th style="width: 34%;">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td> <td>-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8,000원 26,000원 1,000원</td> </tr> <tr> <td>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td> <td>-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8,000원 26,000원 2,000원</td> </tr> <tr> <td>다. 옥상간판</td> <td>-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27,000원 49,000원 1,600원</td> </tr> <tr> <td>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td> <td>-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8,000원 26,000원 1,000원</td> </tr> <tr> <td>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td> <td>-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td> <td></td> </tr> <tr> <td>사. 현수막 게시시설</td> <td>-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td> <td>14,000원 800원</td> </tr> <tr> <td>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td> <td>-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td> <td></td> </tr> </tbody> </table>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가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관 련 법 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 행정자치부 시·군·구 조례 표준안(2016. 7. 6)

###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공고 제2024-477호

##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305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777-3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838-3 (700m 구간)
기간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12월 29일(일)		

#### 이유

한월지구 선형개량공사 사업추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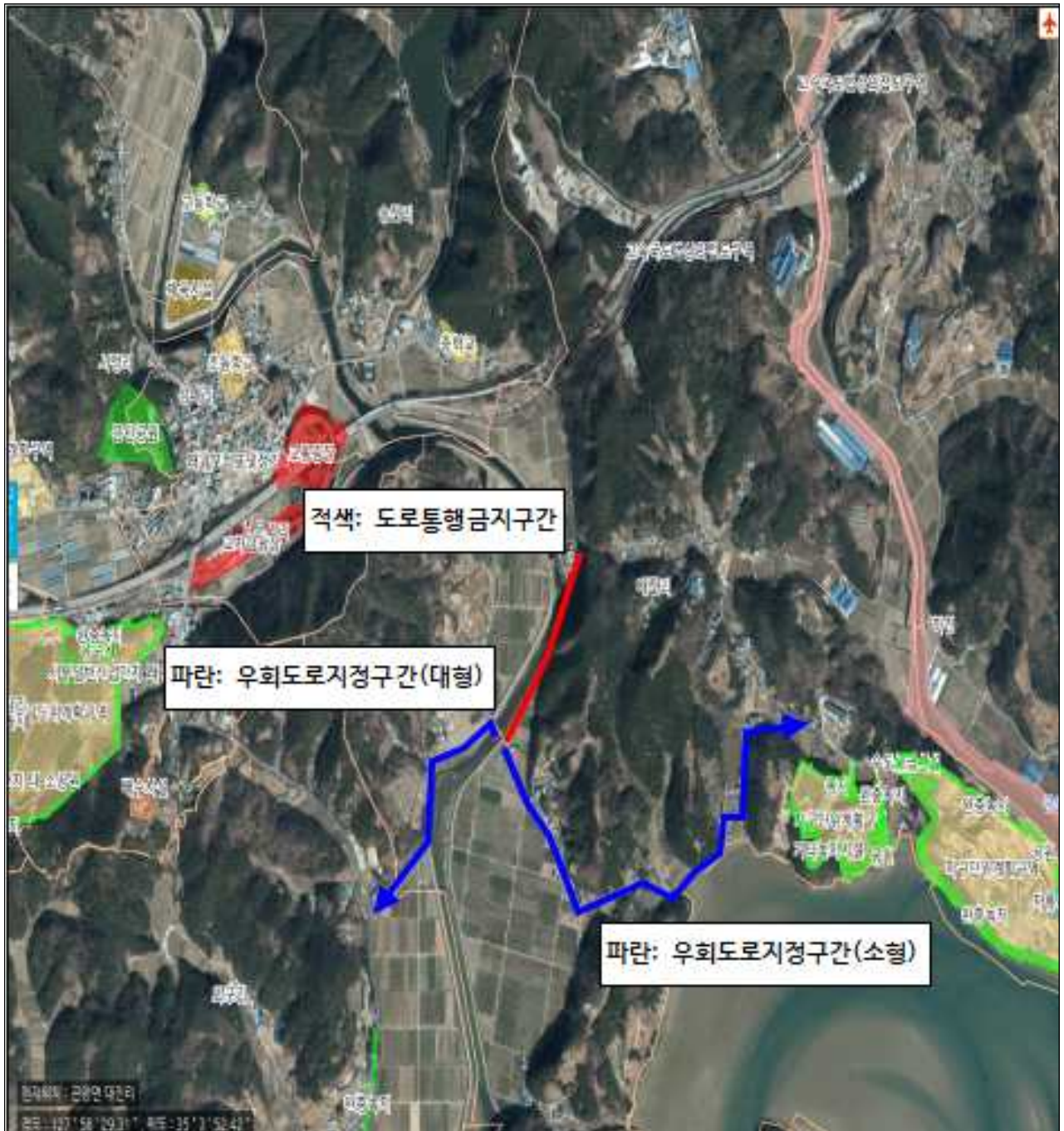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777-3번지 한월지구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공고 제2024-482호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8.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 의견수렴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도로명 부여·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별첨)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4. **의견 제출방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나. 전 화 : 055-831-2822 (FAX: 055-831-6929)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마련	의견수렴 공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고 시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14일이상	30일이내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붙임】

##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의견서

성 명 및 기관·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신 청 예비도로명			
부여 사유 (변경사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 도로명 부여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 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항공산단1로	선진리 967-6	통양리 산9-10	1054	15	로	20	1/106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조성사업 도로개설	용현면
2	항공산단2로	통양리 367-3	선진리 926-25	290	12	로	20	1/30		
3	항공산단3로	통양리 359-1	신촌리 91-1	1000	15	로	20	1/100		
4	항공산단3로(중속)	통양리 365-2	통양리 368-6	358	8.4	로	10	A-1/A-72		
5	항공산단4로	통양리 513-6	통양리 377	500	15	로	20	1/50		
6	항공산단5로	신촌리 134	통양리 239-31	1000	26	로	20	1/100		
7	항공산단6로	신촌리 162-2	통양리 산10-1	1920	20	로	20	1/192		
8	통양4길	통양리 170-26	통양리 142-4	464	8	길	20	1/48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비 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9	통양3길	통양리138-9	신촌리585-1	874	7.5	길	10	57/230	주도로 일부 구간 폐지 (통양3길 57~230)	용현면
10	종포산단2길	신촌리161-5	신촌리62-2	70	8	길	20	37/46	주도로 연장 (종포산단2길 36~44)	용현면
11	신촌길	신촌리 382	신촌리 392-5	110	10	길	10	343/364	도로 선형 개선(변경) (신촌길342~364)	용현면



# 부여도면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구간 변경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2	반릉로	예수리 409	예수리 826-107	105	14	로	20	51/62	'사주천년교' 도로명 부재로 '반릉로' 주도로 연장	정동면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사천시 공고 제2024-505호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행정 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의 폐지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1,  
FAX :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26.>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다만, 직권에 의한 속기 또는 녹음의 경우에 그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4. 상소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는 비용은 상소인

② 제1항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 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 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 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 □ 사천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들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당해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사천시 공고 제2024-508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직무관련사건의 변호비용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변호 비용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도록 정비하여 소송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2. 주요내용

가. 변호 비용 지원 금액 상향(안 제24조)

- 총 일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 비용일부를

→ 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

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심사권자 정비(안 제26조)

- 송무업무 담당 팀장 →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1,

FAX :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81호

사천시 규칙 제 호

##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 일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 비용일부를”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변호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사건이 발생한 경우 <u>총 일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26조(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 (생략)</p> <p>②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송무업무 담당 <u>팀</u>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제24조(변호 비용 지원) ① ----- ----- ----- ---- <u>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부서</u> <u>장</u>-----.</p>